

3. 建設技術管理法施行令改正(案) 立法豫告

建設部公告 第1992-125號 1992. 9. 23

1. 개정이유

건설기술발전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제도와 감리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새로운 기술·공법을 적용한 공사 및 터널등 특수구조물공사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학등 건설기술전문단체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나.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하기 위하여 각 시·도와 국방부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별 심의위원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의 정원을 현재 50인이하에서 80인이하로 확대함.

다. 건설공사에 대한 심도있는 설계심의와 지방건설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대상 공사규모를 국가시행 30억원이상에서 100억원이상, 지방자치단체시행 100억원이상에서 200억원 이상 상향조정으로 심의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대상은 지방자치단체시행 5억원이상 100억원미만에서 1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으로 확대함.

- 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대상 공사중 3억원이상등 일정금액이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동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발주관서등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심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마. 새로운 기술·공법을 적용한 공사 또는 터널등 특수구조물공사에 대하여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

의대상 공사규모이하인 경우라도 설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발주관서의 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새로운 기술·공법을 적용한 공사 또는 터널등 특수구조물공사에 대한 감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관서의 장이 감리회사로 하여금 다른 감리회사와 공동감리단을 구성토록하거나 대학, 연구기관등의 전문가에 별도의 자문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사. 감리전문회사가 감리할 경우 현재는 당해 건설공사의 공정별로 책임시공감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책임시공감리자는 의무적으로 현장상주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별로 책임시공감리자 1인만을 선정하고 현장상주하도록 하여 부족된 책임시공감리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아. 책임시공감리자의 선정을 현재 기술사 또는 건축사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경력이 10년이상된 기사1급의 경

힘이 많은 기술자도 책임시공감리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된 책임시공감리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함.

자. 감리전문회사등에 대하여 영업취소 등 불이익 행정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청문절차를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2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부 기술심의 담당관실(전화 503-73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 2백만호 너와나의 보금자리